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판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33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판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안 제 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1. 2.

다. 회 부 일 : 2026. 1.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주문·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관리·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는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 구매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를 신속히 관리·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반려동물 판매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판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다음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
 -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반려동물의 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4.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7. ~ 9. (생략)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	1. ~ 6의4. (현행과 같음) 6의5.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반려동물의 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 9.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제6호의5-----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동물보호법」 제78조제4항제2호는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을 규정¹⁾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1)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²⁾ 및 별표 12에서는 동물판매업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해당 동물의 실물을 직접 대면하여 보여주도록 하고 있음³⁾.

○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을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구매자에게 실물을 보여주지 아니한 채 사진·영상 등 온라인 정보만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법령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대면 판매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정보의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 불명확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정보통신망 내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명령할 수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

2. 개별 준수사항

다. 동물판매업자

1) 동물을 판매(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판매를 포함한다)할 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뒤에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반려동물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한편, 같은 취지에서 한정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⁴⁾은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려동물 실물 확인·대면 판매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각호는 불법정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범죄로 처벌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비대면 반려동물 판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만약, 같은 취지로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비대면 반려동물 판매 행위가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포함하는 논의를 위한 전제는 충족될 수 있을 것임.

4) 의안번호 제2215832호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 불법정보에 포섭될 수 있어 별도의 불법정보 유형으로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함.
-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각호5)는 단순히 개별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정보로 열거된 것이 아니라, 정보 유통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개인의 법익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전적인 정보 유통 차단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의 범죄 관련 정보는 제9호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반려동물 비대면 판매 행위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침해 또는 회복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별도의 불법정보 유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불법정보는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실물 확인 없는 반려동물 판매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기존 불법정보에 비하여 경미하므로 새로이 불법정보로 추가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금지되는 반려동물 ‘판매’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8

※참고자료

KISO 의견조회 결과

□ 검토 의견

1. 개관

- 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 심의 체제에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여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2. 쟁점

- 현행 방송통신 심의 체계에서 규율 가능하므로, 입법 필요성 낮음
 -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정보, 명예훼손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정보, 사행행위정보 등 소위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제44조의7 제1항). 이에 위반하여 불법정보가 유통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제44조의7 제2항), 불법정보 중 일부 정보의 유통 시에는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제44조의7 제3항).
 - － 방미심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심의를 위하여 제정, 시행중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을 살펴보면, 심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에는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됨(심의규정 제7조 제4호).
 - － 개정안에서 불법정보로 명문화하려는 소위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반려동물의 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유기 등 일정한 위법행위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하여서도 영업 형태 및 방식에 관한 제한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방미심위는 반려동물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위 심의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른 불법정보로 보아 심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현행법상 유통 금지 조치가 가능함.

- 요컨대, 개정안에서 문제삼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반려동물의 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행 정보통신 심의 체계에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낮음

○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로서 두텁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임.⁶⁾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보화사회를 넘어 디지털사회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 보장의 요체는 다름아닌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심의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는 그 심의 대상 정보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심의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1) 구 전기통신사업법⁷⁾ 제53조 제1항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

6)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결정.

의 통신' 을 금하고 있었는데, (2) 헌법재판소가 2002년 위 조항에 관하여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고,⁸⁾ (3) 이에 따라 202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음란한 내용의 통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통신 등 9개 유형으로 '불법통신' 을 구체화하여 이를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4) 이와 같은 불법통신 규제가 2007. 1. 1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전되어 현재와 같은 체계가 마련된 것임.⁹⁾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의대상 불법정보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현재 불법정보로 열거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의 정보와 비교할 때 개정안에서 불법정보로 신설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반려동물의 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는 그 불법의 정도나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기존의 불법정보와 같은 층위(level)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을 차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3. 결론

- 개정안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입법 필요성이 높지 않고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정에 반대함

7) 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8)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4헌마480 결정.

9)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2헌마325 결정.